
농협법 개정 추진현황

2010. 11. 10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정부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2
III. 국회 논의 현황	8
IV. 주요 쟁점 설명	10

I 추진배경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농협은 돈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한편, 신용사업은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다각화 제약 등으로 인해, 최근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
- 현재 구조로는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 뿐 아니라 조합(원) 지원 등의 협동조합 고유 기능도 위축 우려
 - * 신용 순익 : ('06) 10,943억원 → ('07) 13,521 → ('08) 3,304 → ('09) 4,147 → ('10.6) 1,512
 - ('10.6월말 타 시중은행 순익 : 신한 9,688, 기업 6,834, 우리 4,830, 국민 1,735)
-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
- 농민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 건의안('09.3)을 토대로 농협,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농협법 개정안 마련
 - * '09.10.28 입법예고, 11.12 정부 공청회, 12.16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II 정부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주요내용

- 현 농협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일선 조합의 대표 조직으로 농협연합회를 두고, 농협연합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
 - 일선조합 상호금융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 도입
 - 지주회사·자회사에 명칭사용료를 부과, 연합회 재원으로 사용
 - *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 범위에서 부과토록 농협법에 근거 규정 마련
- (경제지주) 중앙회의 수익성 경제사업을 분리, 경제지주 설립
 - 판매·유통·가공 등의 사업을 자회사화하여, 농협유통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경제지주에 편입
 - * 중앙회로부터의 분리 및 자회사화는 조합과의 연계성, 산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 경제지주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자회사 관리·조정, 전략 수립, 자원 배분 등 협동조합과 자회사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 수행
- (금융지주) 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
 - * 국내 5대 은행 중 농협을 제외한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지주회사로 기전환
-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금융지주에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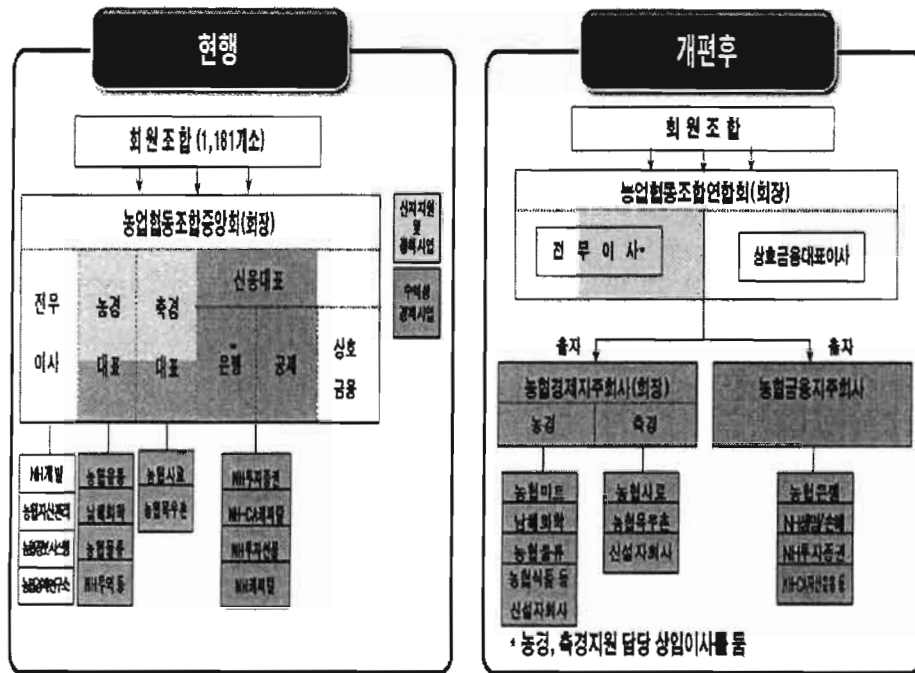
○ 농협은행은 농협법에 근거한 특수은행으로 일반 은행업무 외 연합회 자금 지원, 농업자금 대출 등 농업금융 담당

- 조합 여신자금의 대출, 연합회 및 조합의 사업자금의 대출, 농업 및 농어촌 자금의 대출, 농업금융채권 발행 등

- 연합회 · NH경제의 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자금 및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우대조치 근거 마련

○ 공제부문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전환하여 상품개발 · 판매 등 농협은행과 사업연계로 시너지 제고

- 농협은행과 조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하되 방카슈랑스 규제 5년 유예 등 경과조치를 부여



2 기대효과

◇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 【경제사업】 독립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판매 · 유통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

○ 중앙회 기능이 신용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됨

(현 제) 은행업 등 신용사업에 인력과 재원을 대부분 투입

* 중앙회 인력 현황('09) : 신용 13,665명(76%), 경제 2,519(14%), 교육지원 1,710(10%)

(개편후) 금융지주가 분리되면,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 수행에 있어 독립된 조직과 인력 등 전문성 확보 가능

○ 경제사업은 회원조합 지도·지원 중심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사업 중심으로 전환됨

(현 제) 판매는 회원조합이 담당하고 중앙회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농산물 유통사업의 위험과 손실을 회원조합이 모두 부담

(개편후) 산지 조직화와 판로 개척 등 농축산물 유통에 중앙회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에게는 생산 농축산물의 판로를 보장

* 중앙회가 산지 조합 출하 물량의 50%이상 책임 판매 목표

구 분	2009년	2013년	2015년	2020년
조합출하액(A)	10.3조원	13.4조원	16.4조원	18.9조원
중앙회판매액(B)	3.2조원	4.6조원	9.3조원	13.0조원
중앙회판매비율(B/A)	31.1%	34.3%	56.7%	68.8%

○ 유통 시설 확충, 산지 조직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

(현 제) 경제자본금이 2,715억원에 불과, 필요한 자금은 신용 및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차입

(개편후) 경제부문이 별도의 자본금을 갖고 사업을 수행

* 보유자본금 중 적정 수준을 경제에 배분토록 법 부칙에 명시 추진

□ 【신용사업】 시중은행과 경쟁 가능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농업금융 기관으로서의 이점을 살리면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 창출 가능

○ 수익센터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이익을 농업인 조합에 환원

<국내은행 총자산/당기순이익 비교('10.6월기준)>

구분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총자산(조원)	194.6	274.5	240.3	245.6	157.7	172.5
당기순이익(억원)	1,512	1,735	9,688	4,830	4,503	6,834

□ 【교육·지원】 금융·경제 자회사 등의 명칭사용료 및 배당을 통해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배당금 지급

○ 조직을 슬림화하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 【상호금융】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 상호금융 독자적 역량 강화

○ 조합에 더 높은 운용 수익을 제공하고,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 대응 모색 등 상호금융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참고

농협법 개정 정부안 주요내용

① 농협중앙회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4호)

○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함.

②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 농협연합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관련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업·보험업 등의 금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

③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안 제134조의4)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일부 「은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둠.

④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 농협연합회는 회원으로부터의 경비, 출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며, 특히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000분의 20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⑤ 보험 자회사의 설립 및 설립허가 의제 등 특례 부여(안 제134조의5 및 부칙 제9조)

○ 농협연합회가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한편, 보험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일부 배제하는 경과조치를 둠.

⑥ 상호금융사업의 전문성·독립성 강화(안 제134조제4항 및 제125조 제2항) 및 상호금융사업 분리방안 등 발전계획 수립 추진(부칙 제20조)

- 상호금융특별회계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특별회계 내에 별도의 자본금 계정을 설치하며,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둠.
-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연구용역을 의뢰·완료하고, 농협 연합회는 정부의 연구용역 이후 상호금융사업 부문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1년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함.

⑦ 농협연합회 내 상임이사제도 도입(안 제128조제3항)

-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업무를 각각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두고, 전무 이사는 교육·지원 부문을 직접 담당하면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부문을 총괄함.

⑧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따른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 유지(제125조의5' 및 제134조의2)

- 축산담당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위원회 구성원인 조합장 4명을 모두 축협조합장으로 하며, 농협경제지주회사에는 농업경제사업 부회장 1명과 축산경제사업 부회장 1명을 둠

⑨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 관련 준비행위(부칙 제2조)

- 농협중앙회는 법 공포와 함께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전환하는 절차를 지체 없이 착수하고,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⑩ 국가 등의 농협중앙회의 사업 분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부칙 제3조)

- 국가 및 공공단체는 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등 설립 등을 위한 사업분리에 필요한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Ⅲ 국회 논의 현황

□ 금년 2월 농식품위에 상정하여, 현재 법률안 심사 소위 계류 중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농식품위 공청회 개최(2.11)
 - 정부, 중앙회, 일선조합장, 농업인단체(한농연, 전농), 학계 전문가, 보험업계 관계자 등 참석·의견 개진
 - * 농어업희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2.3), 이해훈 의원 주최 토론회(2.4), 정무위 공청회(4.27), 정범구 의원 주최 토론회(4.29) 등

○ 법률안 심사 소위를 4차례 개최, 개정안 논의 및 심사

- * 정부안, 강기갑, 김춘진(민주), 김영록(민주)의원안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의 중

□ 4월까지 소위에서 사업분리 방식 및 일부 사업구조 개편 지원 사항 등 11개 항목 심사

- 사업분리 방식과 관련, 연합회 - 2지주회사(경제·금융)의 정부안 채택
- 사업구조 개편 지원 중 쟁점이 작은 사항들을 우선 심의하여 합의 도출
 - 연합회·금융·경제지주에 대한 부과금 면제, 연합회와 금융지주의 IT 통합운영을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

□ 그 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본금 지원, 조세 특례, 농협 공제의 보험업 전환조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농협과 의견 접근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 보유자본금 중 적정 수준을 경제 부문에 배분하고, 정부, 농협, 농업인대표,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을 수립키로 함

참고 국회 논의 경과

- '09. 12. 16 농협법개정안(정부안) 국회 제출
- '10. 2. 11 국회 농식품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 '10. 2. 22 농협법개정안 농식품위 상정·대체토론
- '10. 2. 23 ~ 4. 22 법률안 심사소위 개최 (총 7차)
 - ▷ 2. 23 농협법 등 61개 법안 상정
 - ▷ 2. 24 조합 선거제도 관련 개정사항 심사
 - ▷ 3. 15 농협법 관련 의사진행발언 후 산회
 - ▷ 4. 13 개의 직후 산회
 - ▷ 4. 14 비쟁점 사안 12건 심사 및 합의
[조합선거제도, 부과금 면제, 농금채 발행, 전산특례 등]
 - ▷ 4. 19 축산특례 및 사업분리 방식 심사
 - ▷ 4. 22 사업분리 방식 심사 및 표결 처리
[1연합회-2지주회사 방식 확정]
- '10. 4. 27 국회 정무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 '10. 6. 18 제18대 후반기 국회 원 재구성
 - 최인기(민주당) 위원장 등 7명 교체
- '10. 9월 상임위 자본금 지원, 조세 특례, 보험 등 쟁점에 대해 정부, 농협간 합의 요구

IV 주요 쟁점 설명

1 자본금 지원

- ◇ 사업구조 개편 이후에는 연합회, 농협은행, 경제지주 등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 중앙회 보유자본금 외 추가 자본금 확충이 필요
- 현재는 농협법(§11②)에 따라 중앙회 전체 자본금(출자금 등)을 신용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법인이 분리되면 관련 특례 유지 불가능

가. 정부안

□ 재정·금융 등 지원 근거 규정

* 법 부칙 제3조(국가 등의 연합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단체는 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등 설립 등을 위한 사업 분리에 필요한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협의결과

-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우선 농협이 자체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
- 다만, 지원 규모, 대상 및 방식은 법 개정 이후 자산실사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하고,
- 대신, 이를 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국회에 지원 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와 의무를 법 부칙에 명시하고, 지원 후에도 자율성 보장 문구 삽입

2 조세 특례

◇ 단일 조직 내에서 운영되던 경제·신용사업이 각각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면 현재는 발생하지 않던 세금이 추가 발생

○ 개편에 따른 일시적 조세부담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도 매년 지속 발생

* 중앙회 추정 : 사업 분리 시 8,000억원, 사업 분리 후 운영과정에서 연간 4,000억원 수준의 추가 조세 부담이 발생

<사업 분리 시>

①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세 이연, ②주식 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③재산 취득시 취득·등록세, ④설립 등기에 따른 등록세, ⑤물적 분할시 부가가치세, ⑥자산 양도차익 교육세, ⑦주식교환시 신설법인 주식 미처분 의제, ⑧적격 분할요건 충족 의제
<사업 영위 시>

①중앙회의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허용, ②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확대, ③기존 공제계약분 보험사업 이전 후 교육세, ④명칭사용료 법인세 손비 인정, ⑤명칭사용료 부가가치세, ⑥전산용역 부가가치세

가. 정부안

□ 명문 규정 없음

* 조세 특례는 개별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 사항(조특법 3조는 동 법, 국제기본법 및 조약 외 타 법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제한)

나. 협의결과

□ 사업구조 개편에 지장이 없도록, 1년여의 준비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세 감면 부여

3 농협공제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가. 정부안

□ 중앙회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설립

○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 의제, 자동차보험·변액보험 등 미취급 종목은 별도 허가 필요

○ 종전 공제계약은 신설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으로 이전

□ 조합·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 의제하고, 농협생명·손해보험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규제 5년 유예(단, 25%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방카슈랑스 규제(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 : (1) 1사당 판매비율 25% 제한, (2) 모집방법 : ① 점포 외 모집행위(outbound 영업) 금지, ② 창구판매자 2인 이내 제한, (3) 판매상품 : 저축성 및 제3보험은 판매 허용, 보장성 보험은 판매 불가

나. 협의결과

□ 조합·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정부안의 기본 틀 유지

○ 일반 여·수신업무, 정책자금 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

□ 농업인 불편이 없도록 농·임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 정책보험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 예외 인정

○ 모집인 수(2인 이내) 및 점포 외 모집(outbound) 제한 배제